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연구사 1명)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11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“633명”을 “634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(연구사 1명)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5 - 2503